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30 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이수진 · 민병덕 · 박홍배

이기헌 · 김동아 · 최기상

백승아 · 김현정 · 임미애

정성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 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,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58조 제8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7항 전단 중 "사람은"을 "사람과 제8항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⑥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⑥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 -----<u>사람과</u>제8항에 따라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--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 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 <신 설> ⑧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 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 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<u>⑧</u> (생 략)
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